

2024년 제12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 
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2 월 27 일

여 수 시 장

정기명



여수시 규칙 제848호

붙임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부

여수시 규칙 제848호

##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제2호 중 “별표1”을 “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”로 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안
<p>제22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 ·            ② (생 략)            ③ 제2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(收受)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(생 략)            2.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으로서 <u>별표1</u>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</p> <p>3. ~ 8. (생 략)            ④ ~ ⑧ (생 략)            [별표 1]</p>	<p>제22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 ·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2.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---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④ ~ ⑧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&lt;삭제&gt;</p>